



제 424회 국회 (임시회)  
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#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9140호)

2025. 4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임재금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  | 1 |
| III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확대 .... | 2 |

## I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부

나. 제 출 일 : 2025. 3. 19.

다. 회 부 일 : 2025. 3. 20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확대

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‘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’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5조)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<br>· ② (생략)<br>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~ 8. (생략)<br>9. <u>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</u><br><u>&lt;신설&gt;</u><br><br>④ ~ ⑦ (생략) |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<br>·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<br>-----.<br>1. ~ 8. (현행과 같음)<br>9. <u>동물의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10. <u>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</u><br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br><br>부칙<br>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
현행법은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정해진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①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, ② 동물의 반환 등, ③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, ④ 동물의 기증·분양 등, 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, ⑥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, ⑦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, ⑧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, ⑨ 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.<sup>1)</sup>

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‘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

---

1)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
2.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
3.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
4.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·분양
5.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
6.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
7.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
8.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
9. 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~ ⑦ (생략)

제36조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’를 추가함으로써, 동물보호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,

법률상 명시된 업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<sup>2)</sup>

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424 |

2)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추30 판결[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] [공1999.11.1.(93),2226]

【관시사항】

- [1]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[2]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

【판결요지】

- [1]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,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.
- [2]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,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.

## 참고1

##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황(2023년 기준)

| 구분  | 개소수 (개소) |    |     |
|-----|----------|----|-----|
|     | 합 계      | 직영 | 위탁  |
| 합 계 | 228      | 71 | 157 |
| 서울  | 16       | 2  | 14  |
| 부산  | 5        | -  | 5   |
| 대구  | 23       | -  | 23  |
| 인천  | 12       | -  | 12  |
| 광주  | 1        | -  | 1   |
| 대전  | 1        | 1  | -   |
| 울산  | 12       | -  | 12  |
| 세종  | 1        | -  | 1   |
| 경기  | 25       | 12 | 13  |
| 강원  | 18       | 9  | 9   |
| 충북  | 9        | 2  | 7   |
| 충남  | 16       | 4  | 12  |
| 전북  | 24       | 6  | 18  |
| 전남  | 22       | 11 | 11  |
| 경북  | 22       | 12 | 10  |
| 경남  | 20       | 11 | 9   |
| 제주  | 1        | 1  | -   |

※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